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 취급절차

제정	1998.	11.	13.	부장결재	국국	6011-	961
개정	2000.	10.	4.	국장결재	국국	6950-	879
	2002.	3.	18.	국장결재	국국	6950-	125
	2005.	6.	29.	국장결재	국업	6951-	339
	2006.	3.	30.	국장결재	국제	기획팀-	409
	2007.	8.	22.	국장결재	외환	업무팀-	1328
	2008.	12.	16.	국장결재	외환	업무팀-	2605
	2010.	4.	26.	국장결재	외환	업무팀-	816
	2010.	6.	23.	국장결재	외환	업무팀-	1263
	2011.	7.	28.	국장결재	국제	총괄팀-	94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취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운용의 일반원칙) ① 세칙 제3조 제1항의 한국은행 당좌예치금의 잔액은 원칙적으로 미화 1천달러 미만으로 유지한다. 다만, 한국은행 당좌예치금 잔액에는 기금운용관련 잔여금, 당좌예치금으로 운용토록 별도로 지정된 자금 및 지급을 위한 일시 대기자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세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외화매매거래시 매매환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7호의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한다.

제2장 외화자금운용

제1절 정기에치 등

제3조(한국은행에의 정기에치) ① 세칙 제4조에 따른 한국은행에의 미달러화 정기에치는 미화 1천달러를 최저금액으로 하여 미화 1천달러 단위로 예치한다.

② 세칙 제4조 제2항의 채권수익률은 로이터(Reuters)통신에 게재된 뉴욕시장 종가기준 매수수익률(Ask yield)로 한다. 다만, 동 통신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블룸버그(Bloomberg)통신이나 그 밖의 이용가능한 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③ 세칙 제4조 제2항의 영업일은 뉴욕시장 영업일로 한다.

④ 세칙 제4조 제2항의 산술평균금리는 소수점 이하 제6위에서 절사한다.

제4조(외국환은행에의 정기에탁) 세칙 제5조에 따른 정기에탁금을 수탁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기에탁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외화콜론

제5조(약정서 제출) 세칙 제6조의 외국환평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외화단기 자금거래(이하 “외화콜거래”라 한다) 대상기관이 외화콜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외화콜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기관별 한도) 세칙 제7조의 대상기관별 외화콜론 한도는 대상기관의 단기 대외부채, 국내콜머니 실적, 매입외환규모, 신용등급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입찰방법) ① 세칙 제9조의 외화콜 경쟁입찰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를 통해 실시하며,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와 한국은행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는 대상기관별 응찰내역을 취합한 후 한국은행에 제출하며 한국은행이 결정한 낙찰결과를 대상기관에 통지한다.
2. 한국은행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송부한 응찰자료에 따라 낙찰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외환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세칙 및 이 절차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외환거래규약」 및 「외국환은행간 외환거래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낙찰방법) ① 제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낙찰금액은 ABS(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가 고시하는 해당 기간물의 예금금리(SIBID) 이상으로 응찰한 기관중에서 응찰금리가 높은 순서로 응찰금액만큼 배정한다. 다만, 응찰금액이 입찰금액을 초과하여 동일한 금리에서 경합되는 경우에는 경합되는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낙찰금액을 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동일금리로 임의배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신용하락 등과 같이 외화콜거래를 체결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를 낙찰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9조(운용금액단위) 외화콜 경쟁입찰의 응찰 및 낙찰 최저금액은 미화 100만달러로 하며, 그 금액 이상의 운용단위는 미화 100만달러의 배수로 한다.

제10조(입찰시간) ① 외화콜 경쟁입찰은 국내 외화콜시장 개장시간(09:00~15:00)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외화콜 경쟁입찰 실시전에 입찰시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자금의 운용) ① 세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익일 만기 정기예치금의 이자는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소수세째자리에서 버린다.

예금이자=예치기간중 예금평균잔×예치기간중 평균예치금리×예치일수÷360

② 제1항의 예치이자는 익월 첫영업일에 영수한다.

제12조(거래확인서 제출) ① 대상기관은 외화콜거래 낙찰통지를 받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외화콜거래확인서의 접수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대상기관과의 별도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금의 결제) ① 체결된 외화콜거래에 따른 자금의 결제는 한국은행이 지정하는 날에 이행한다.

② 제1항의 자금결제는 대상기관의 해외거래은행과 한국은행의 해외거래은행을 통하여 총액 또는 차액으로 이행한다. 다만, 차액결제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콜거래 자금이체계산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화콜거래의 이자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며, 만기일에 영수한다.

제3장 원화자금운용

제14조(약정서 제출) 세칙 제12조에 따른 원화단기자금거래(이하 “원화콜거래”라 한다) 대상기관이 기금과 세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방식으로 원화콜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원화콜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거래원의 등록) ① 제14조에 따라 원화콜거래약정서를 제출한 원화콜거래 대상기관이 그 기관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기금과 원화콜거래를 행할 거래원을 신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거래원 선정(변경)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원 선정(변경)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원화콜거래 대상기관은 별도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의 기금 원화콜거래 전자입찰시스템(이하 “전자입찰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거래원 등록 또는 거래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기관별 한도) ① 경쟁입찰방식 원화콜거래의 경우 대상기관별 원화콜론 한도는 대상기관의 필요지급준비예치금, 자기자본, 신용등급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설정하는 대상기관별 한도배정비율에 따라 입찰시마다 설정한다.

대상기관별 원화콜론한도=대상기관별 한도배정비율×입찰한도(입찰금액×배율)

② 원화자금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콜거래의 경우 대상기관별 원화콜론한도는 대상기관의 자기자본,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설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유찰분에 대한 재입찰의 경우에는 직전 입찰시에 부여한 한도중 잔여한도를 기준으로 입찰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방법) 세칙 제14조 제1항의 원화콜 경쟁입찰은 제18조에 따른 전자입찰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서면입찰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전자입찰방법) ① 원화콜 전자입찰 참가기관은 기금이 사전에 통보한 입찰시간 이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이 제공하는 화상양식에 따라 응찰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응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된 거래원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원화콜거래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 응찰내역의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 실시중에 전자입찰시스템 주전산기의 일시적인 장애 등으로 금융기관의 응찰내역 입력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 실시공고후 전자입찰시스템 주전산기의 장애 등으로 응찰내역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시간을 연기하거나 제19조에 따른 서면입찰로 전환할 수 있다.

제19조(서면입찰방법) ① 서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의 등록된 거래원은 원화콜거래신청서를 한국은행이 통보하는 시간 이내에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화콜거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입회하는 한국은행 감사실 검사역이 사전에 봉인한 입찰함에 넣어 관리한다.

③ 서면입찰의 장소는 한국은행 본점에 한한다.

제20조(최저낙찰금리) ① 입찰참가자들의 금리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시장동향 등을 감안하여 입찰실시 전에 최저낙찰금리를 산정하여 개봉시까지 대외비로 관리한다.

② 최저낙찰금리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시간 마감후에 개봉하여 전산입력하며, 서면입찰의 경우에는 감사실 검사역이 입회한 가운데 입찰참가신청서보다 먼저 개봉한다.

제21조(낙찰방법) 낙찰금액은 한국은행이 내정한 최저낙찰금리이상으로 응찰한 자중에서 응찰금리가 높은 자의 순서대로 응찰금액만큼 배정한다. 다만, 응찰금액이 입찰금액을 초과하여 동일한 금리에서 경합되는 경우에는 경합되는 자의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낙찰금액을 억원단위로 배정한다.

제22조(거래체결 통지) ① 낙찰결정후 낙찰금리 및 낙찰금액을 포함하는 원화콜거래체결결과를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의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통지하고, 서면입찰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원화콜거래체결통지서를 대상 기관에 송부한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원화콜거래체결결과를 전자문서로 접수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통지서를 접수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이 전자문서 또는 서면 통지서로서 계약서를 갈음한다.

제23조(자금의 결제) ① 체결된 원화콜거래에 따른 자금의 결제는 입찰일에 이행한다. 다만, 정책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지정하는 날에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결제는 한국은행에 개설한 대상기관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이행한다.

③ 원화콜거래의 이자는 원미만을 버리고 산출하며, 만기일에 영수한다.

제24조(대상기관의 의무) ① 대상기관은 성립된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거래원은 경쟁입찰과정에서 금리조작 등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제재) 이 절차에 따라 체결된 거래계약에 따른 채무나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원화자금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콜거래) 원화자금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콜거래는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화자금중개회사의 약정에 정한 방법을 따른다.

제4장 감채기금

제27조(감채기금예수) ① 세칙 제17조에 따라 기금에 감채기금적립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채기금예치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채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기관은 감채기금예치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채기금예치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대상채무의 상환 등 감채기금예치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채기금예치금 반환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채기금예수 및 원리금상환은 한국은행에 설치된 해당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계정을 통하여 이행한다.

제5장 회계처리

제1절 회 계

제28조(계정과목) ① 기금의 계정과목은 재정상태표계정과 재정운영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의 배열은 유동성배열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상태표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의 순서로, 재정운영표계정은 수익, 비용의 순서로 각각 구분 배열한다.

③ 계정과목의 명칭과 배열은 별표와 같다.

제29조(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및 계획된 예산 범위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 발행비 및 기금관리비를 제외한 타계정은 거래발생시 전표만을 기표하고 지출결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가지급금) 여비와 그 밖의 경비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급을 할 수 있다. 가지급한 사업의 내용 또는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리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개산지급)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경비지출의 경우에는 개산지급을 할 수 있다. 개산지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영수증) ① 경비지출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영수증이 다른 목적에 소요되어 그 원본을 지출증빙서에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대응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증빙서의 기재요건 및 정리) ① 지출증빙서에는 비목, 지급의 사유, 계산의 기초 및 지급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출증빙서는 매 연도별로 각 항목으로 구분하여 간지를 붙여 편철한다.

제34조(거래의 회계처리) ① 회계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계정과목별로 일중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야 하며,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일중거래명세표에는 각 거래의 계정과목, 통화, 금액, 차·대변합계 및 계좌별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를 전표로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전표) ① 제34조에 따라 작성하는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증빙서 또는 결의서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표는 각 계정별, 통화별로 차변 또는 대변합계표를 작성하며 대체 거래는 대체와 매입, 매각으로 구분 기재한다.

제36조(결산서류) 결산시에는 「국가회계법」, 관련법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환계정

제37조(적용 환율) 기금의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외국통화금액의 대원화환산율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환율로 한다.

제38조(외화표시 전표) 제34조에 따라 작성하는 외화표시 전표에는 다음 사항을 병기한다.

1. 금액란에는 외화금액과 원화금액, 적요란에는 환율 및 거래종류. 다만, 동종 외화의 대체전표에는 적용환율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2. 외국환의 매매시에는 적요란에 Bought 또는 Sold의 표시
3. 그 밖에 거래 관행상 필요한 사항

제39조(기장처리) ① 총계정원장은 통화별로 작성하며 외화금액과 원화금액을 각각 기장한다.

② 총계정원장 차감잔액표는 총계정원장의 계정별 원화합산금액을 기장하여 일별로 작성한다.

제40조(원화환산금액의 원미만 처리) 적용환율에 따른 당해 외화의 원화환산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원미만은 절사한다.

제41조(이자계산) 외화자산 운용이자 계산과 관련하여 이 절차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용대상기관의 규정 및 국제관례에 따른다.

제3절 기 타

제42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기준」, 한국은행의 「회계규정」 및 「외국환거래 회계처리절차」 등을 준용한다.

부 칙 <1998. 11. 13>

제1조(시행일자) 이 절차는 1998. 11.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절차 시행일 이전에 성립된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콜거래, 원화콜거래 및 감채기금예수거래는 이 절차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외국환평형기금 감채기금예치금 계정 개설요청」(제업 6951-479, '98.4.20)에 따라 이미 체결된 감채기금예치금계정 거래약정은 이 절차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10. 4>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00. 10. 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위는 이 절차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3. 18>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02. 3.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이전에 예치된 정기에치금에 대하여는 종전 절차를 계속 적용한다.

부 칙 <2005. 6. 29>

이 절차는 2005. 6.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30>

이 절차는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22>

이 절차는 200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6>

이 절차는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6>

이 절차는 201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23>

이 절차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28>

이 절차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외국환평형기금 계정과목^{주)}

자 산

- I. 유동자산
 - 1. 예치금
 - 가. 당좌예치금
 - 1) 한국은행예치금
 - 2) 기타예치금
 - 나. 정기예치금
 - 1) 한국은행예치금
 - 2) 기타예치금
 - 2. 대출금
 - 3. 콜 론
 - 가. 원화콜론
 - 나. 외화콜론
 - 다. 외화대손충당금
 - 4. 유가증권
 - 5. 기타자산
 - 가. 선급비용
 - 나. 미수수익
 - 다. 미수부담금수익
 - 라. 가지급금
 - 마. 경과이자매입금
 - 바. 미수금
 - 사. 파생상품자산
- II. 고정자산
 - 1. 투자자산
 - 가. 출자금
 - 나. 위탁외화자산

비 용

- 1. 영업비용
 - 가. 채권이자
 - 나. 외화채권이자
 - 다. 채권발행할인료
 - 라. 외화채권발행할인료
 - 마. 채권매출할인료
 - 바. 외화채권매출할인료
 - 사. 채권발행비
 - 아. 외화채권발행비
 - 자. 감채기금예수금이자
 - 차.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자
 - 카. 기금관리비
 - 타. 파생상품거래지급이자
 - 파. 지급수수료
 - 하. 유가증권매매손
 - 가. 위탁외화자산운용손실
 - 나. 외화대손상각비
 - 다. 미수수익 환입
 - 라. 선수수익 환입
- 2. 영업외비용
 - 가. 외화채권발행비상각
 - 나. 외화채권발행차금상각
 - 다. 외환평가손
 - 라. 유가증권평가손
 - 마. 파생상품평가손실
 - 바. 전기과오납금반환금
 - 사. 잡 손
- 3. 특별손실
 - 가. 전기오류수정손

부 채

- I. 유동부채
 - 1. 기타부채
 - 가. 채권매출금
 - 나. 외화채권매출금
 - 다. 미지급금
 - 라. 미지급비용
 - 마. 선수수익
 - 바. 가수금
 - 사. 파생상품부채
- II. 고정부채
 - 1. 채권발행
 - 채권할인발행차금
 - 채권할증발행차금
 - 2. 외화채권발행
 -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3. 감채기금예수금
 - 4.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자 본 금

- 1. 정부출연금
- 2. 잉여금
 - 가. 이월이익잉여금
 - 나. 당기순이익(손실)
- 3. 자본조정
 - 가. 자산평가조정금
 - 나. 외화환산조정금

수 익

- 1. 영업수익
 - 가. 당좌예치금이자
 - 나. 정기예치금이자
 - 다. 기타예치금이자
 - 라. 대출금이자
 - 마. 원화콜론이자
 - 바. 외화콜론이자
 - 사. 유가증권이자
 - 아. 파생상품거래수입이자
 - 자. 유가증권매매익
 - 차. 위탁외화자산운용이익
 - 카. 선급비용 환입
 - 타. 미지급비용 환입
 - 파. 채권발행할증료
 - 하. 배당금수익
- 2. 영업외수익
 - 가. 외환평가익
 - 나. 유가증권평가익
 - 다. 파생상품평가이익
 - 라. 부담금수익
 - 마. 가산금수익
 - 바. 잡 익
- 3. 특별이익
 - 가. 전기오류수정익

주 : 외환건전성부담금·가산금 및 그 운용에 따른 재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의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처리

<별지 제1호 서식>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자금 예탁거래 약정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수입인지

본인은 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자금 예탁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년 월 일

주 소
은행명
대표자

제1조(용도) 예탁 외화자금은 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만 운용한다.

제2조(예탁한도) 예탁한도는 귀행이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예탁통화 및 기간) 예탁통화는 미 달러화로 하며, 예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예탁금리) 예탁금리는 예탁일 2영업일전의 예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BBA 고시 LIBOR로 한다.

제5조(수탁신청) 외화자금을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예정일의 제1영업일전까지 귀행이 정한 수탁신청서에 의해 귀행에 신청한다.

제6조(상환) ① 예탁금은 만기일에 예탁통화로 상환한다. 다만, 예탁자금을 투자한 해외투자펀드의 청산 등으로 만기일전에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동 회수일의 익영업일까지 해당 예탁자금을 예탁통화로 상환한다.

② 만기일 또는 중도상환일이 휴일 또는 뉴욕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 또는 중도상환일로 한다.

제7조(이자지급)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기간 만기일 또는 예탁금 중도상환일에 예탁통화로 지급하되 거래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하며, 소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자금의 결제) 자금결제는 귀행이 정한 자금이체계산서를 사전에 귀행에 제출하여 본인의 해외거래은행과 귀행의 해외거래은행을 통하여 차액으로 이행한다.

제9조(담보) 귀행이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귀행이 승인하는 담보를 제공한다.

제10조(상계) 본인이 예탁 원금 및 이자를 만기일 또는 중도상환일에 상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귀행이 사전통지후 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으로부터 위 해당금액을 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상계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연체이자) 본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체이자에 귀행이 지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2조(결제계좌등) 본인이 외화자금예탁거래에 사용할 결제계좌, 대리인 및 사용인감은 별도 통보한다.

제13조(자료제출) 본인은 본 예탁자금과 관련하여 귀행이 요구하는 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제14조(기타) 예탁거래와 관련하여 동 약정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소송)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귀행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붙 임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콜거래 약정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수입인지

본인은 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콜거래를 행함에 있어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취급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하며, 다음 제조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년 월 일

주 소
은행명
대표자

제1조 본인은 외화콜거래에 사용할 명칭, 대표자, 주소와 인감 등을 귀행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 거래확인서 등 기타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명 인감 또는 명판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 둔 것과 대조한 후 귀행이 다름이 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서명감의 위조, 변조, 도용, 분실 등 기타 어떠한 사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 귀행이 외화콜 입찰공고시 담보제공요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다.

제4조 본인이 제3조에 의해 제공한 담보가 담보요건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귀행이 승인하는 담보로 대체 제공하거나 관련 채무 및 이자를 즉시 상환한다.

제5조 본인은 외화콜거래와 관련하여 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중 어느 채무든지 이행을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귀행으로부터 불이행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귀행이 사전통지후 본인의 타채무 일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본인은 귀행과 거래함에 있어 귀행이 설정한 본인의 외화콜거래 한도초과를 이유로 본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거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 외화콜거래 입찰과정에서 금리조작 등 담합행위를 하거나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응찰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제8조 ① 외화콜거래의 낙찰자금 및 상환원리금은 귀행의 해외거래은행과 본인의 해외거래은행을 통하여 결제한다.

② 외화콜거래의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③ 외화콜거래의 이자는 거래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하며, 소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외화콜거래의 만기일이 휴일 또는 뉴욕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제9조 외화콜거래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부담으로 결제일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귀행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귀행이 인정하는 경우 귀행이 사전에 통지한 후 원리금 및 여타 손실금을 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 및 귀행에 대한 당행의 채권에서 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상계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본인이 귀행과 외화콜거래와 관련하여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행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본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체이자(이자)는 귀행이 지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2조 본인은 귀행이 정책상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후 이 약정을 해지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외화콜거래와 관련하여 동 약정서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외환거래규약”, “외국환은행간외환거래지침”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4조(합의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귀행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 임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거 래 확 인 서(CONFIRMATION)

DEAL DATE :

TO : FOREIGN EXCHANGE BUSINESS DIVISION,
INTERNATIONAL DEPARTMENT,
THE BANK OF KOREA

FROM :

WE CONFIRM HAVING BORROWED FROM YOU AS FOLLOWS

BORROWER :

LENDER :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VALUE DATE :

MATURITY DATE :

PRINCIPAL :

RATE :

INTEREST AMOUNT :

TOTAL :

ON VALUE DATE, PLEASE PAY TO :

ON MATURITY DATE, WE WILL REPAY PRINCIPAL PLUS ACCRUED
INTEREST TO :

<별지 제3호 서식>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콜거래 자금이체 계산서

. . .일자 외국환평형기금 외화콜론거래와 관련하여 우리은행(회사)과 귀행간 이체자금의 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은행(종합금융회사)

(단위 : 미달러)

만기상환원리금 (A)	금일차입금액 (B)	차액 ¹⁾ (C=A-B)	비고

주 : 1) 차액이 플러스(+)인 경우 우리은행(회사)이 귀행의 해외코레스은행(BTC-NY)으로 동 금액을 이체하며,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귀행이 우리은행(회사)의 해외코레스은행으로 동 금액을 이체함을 의미

<별지 제4호 서식>

외국환평형기금 원화콜거래 약정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수입인지

본인은 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원화콜거래를 행함에 있어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업무취급세칙」 및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취급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하며, 다음 제조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년 월 일

주 소
은행명
대표자

제1조 ① 본인은 원화콜거래에 사용할 명칭, 대표자, 주소와 인감 등을 귀행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서면등록을 필한 경우 이와는 별도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의 원화콜전자입찰시스템이 제공하는 화상양식에 의거 거래원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다.

제2조 거래신청서 등 기타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명 인감 또는 명판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 둔 것과 대조한 후 귀행이 다름이 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서명감의 위조, 변조, 도용, 분실 등 기타 어떠한 사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 귀행이 입찰공고시 담보제공요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다.

제4조 본인이 제3조에 의해 제공한 담보가 담보요건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귀행이 승인하는 담보로 대체 제공하거나 관련 채무 및 이자를 즉시 상환한다.

제5조 본인은 원화콜거래와 관련하여 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중 어느 채무든지 이행을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귀행으로부터 불이행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귀행이 사전통지후 본인의 타채무 일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본인은 귀행과 거래함에 있어 귀행이 설정한 본인의 원화콜거래 한도초과를 이유로 본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거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 원화콜거래 입찰과정에서 금리조작 등 담합행위를 하거나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응찰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제8조 ① 원화콜거래의 낙찰자금 및 상환원리금은 귀행에 개설된 본인의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결제한다.

② 원화콜거래의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③ 원화콜거래의 이자는 거래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하며, 원미만은 버린다.

④ 원화콜거래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 한다.

제9조 원화콜거래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부담으로 결제일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귀행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귀행이 인정하는 경우 귀행이 사전에 통지한 후 원리금 및 여타 손실금을 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 및 귀행에 대한 본인의 채권에서 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상계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본인이 귀행과 원화콜거래와 관련하여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행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본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체이자선 귀행이 지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2조 본인은 귀행이 정책상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후 이 약정을 해지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원화콜거래와 관련하여 동 약정서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4조(합의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귀행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 임 :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거래원 선정(변경) 통지서

한국은행총재 귀하

귀행(외국환평형기금)과 원화콜거래를 수행할 거래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또는 변경)하였습니다.

	선정시 (또는 변경전)		변경 후	
성명				
직책				
사용인장				

년 월 일

은행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서식>

외국환평형기금 감채기금예치계정 거래약정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수입인지

본인은 재정경제부의 「외화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방안통지」(외자 11275-22, '98.4.17)에 의거 귀행(외국환평형기금)에 본인명의 감채기금예치금계정 개설을 신청하며 동 계정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 제조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년 월 일
 주 소
 외 국 환 은 행 명
 대표자 (본인자필) (인)

인감대조	계 인	검 인

제1조 이 계정에의 예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평형기금 감채기금 예치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며 동 예치금 반환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환평형기금 감채기금 예치금 반환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제2조 제1조에 규정된 예치신청 및 반환청구시 사용할 직성명, 인감, 필적, 명판 등 (이하 “서명감”이라 한다)은 한국은행의 외화타점예수계정 거래약정시 이미 신고한 서명감을 사용한다. 다만, 이와 다른 별도의 서명감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대리인을 두어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행에 미리 신고한다.

제3조 이미 신고된 서명감을 갱신 또는 변경하거나 주소 및 명의 변경을 할 경우와 또 인감 및 명판을 분실, 멸실, 도난 또는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귀행에 신고한다.

제4조 귀행이 본 계정과의 거래를 위한 모든 증표 및 신고서류에 사용한 인영을 보

통의 주의로서 위 제2조의 서명감을 대조한 후 상위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인감의 위조, 변조,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5조 제3조의 신고지체로 인한 모든 손해와 이 약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6조 본인은 귀행이 정책상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후 이 약정을 해지 또는 갱신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이 약정의 이행에 따른 소송은 귀행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외국환평형기금 감채기금 예치신청서

(년 월 일)

외국환평형기금 출납역 귀하

당행(사)은 정부의 외화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금으로 다음과 같이 귀 기금에 개설한 본인명의 감채기금예치금계정에 예치하고자 하오니 한국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외화타점예수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차기하여 입금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치신청내용

예치회차	예치일자	금액(U\$)

2. 예치금누계

(단위: 미달러화)

피보증채무잔액(A)	예치금누계(B)	비율(B/A, %)

신 청 인 서 명

인감대조	계 인	검 인

외국환평형기금 감채기금 수취통지서

(년 월 일)

은행(종금) 국제부장 귀하

귀행(사)의 외국환평형기금 감채기금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수취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예치일자	예치금액(U\$)	예치금잔액(U\$)

외국환평형기금 출납역(인)

<별지 제10호서식>

외국환평형기금 감채기금예치금 반환신청서
(년 월 일)

외국환평형기금 출납역 귀하

당행(사)가 정부의 외화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금으로 귀행(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을 청구하오니 한국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의 외화타점예수계정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액(U\$)	반 환 신 청 사 유

신 청 인 명 서 명

인감대조	계 인	검 인

붙 임 : 예치금 반환청구액 산출근거 및 증거서류

외국환평형기금 감채기금예치금 반환통지서
(년 월 일)

은행(종금) 국제부장 귀하

귀행(사)의 외국환평형기금 감채기금예치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은행에 개설된 귀행(사)명의 외화타점예수계정에 입금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입 금 일 자	입 금 액(U\$)	비 고

외국환평형기금 출납역(인)